##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3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이건태・박민규・김한규

박홍배 • 노종면 • 모경종

이훈기 • 민형배 • 김남근

이해식 · 서영석 · 양부남

박희승 • 김종민 • 문진석

전현희 · 김동아 · 최민희

박선원 • 박해철 • 송재봉

문금주 · 손명수 · 박수현

김문수 · 김용만 · 강유정

복기왕 · 안호영 · 이재강

정준호 • 위성곤 • 안태준

김 윤 • 이원택 • 문대림

홍기원·강훈식·김 현

백승아ㆍ허성무ㆍ김태년

김승원 · 허종식 · 박균택

이재관 · 김주영 · 한민수

이인영 • 박지혜 의원

(50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함.

수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 야 함(수사의 비례성).

그러나 이러한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동 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표적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를 자행하여 왔음.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 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탄압수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의 혐 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별 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 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④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
	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
	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u>&lt;신 설&gt;</u>	⑥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영장의 청
	구를 기각하여야 한다.